성주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

의 안 번 호	

제출년월일 : 2005. 8. .
발 의 자 : 권중현 의원외2인

1. 개정이유
 ◦ 지방자치법 제41조 제2항 정례회의 회기는 년2회를 합하여 35일이내로 하고, 임시회의 회기는 15일 이내로 한다는 조항이 삭제되어 개정공포 (2005. 1. 27)됨에 따라, 연간 총 회의일 수 80일 범위안에서 정례회의 및 임시회의를 자율 조정하여 운영하려는 것임

2. 주요내용
 ◦ 정례회의 회기는 연 2회를 합하여 35일 이내로 한다는 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임(안 제3조)

3. 세부내용 : 붙 임

4. 신·구조문대비표 : 붙 임

5. 참고자료
 ◦ 지방자치법 제41조
 ◦ 성주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

성주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

성주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"성주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"를 "성주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"로 한다

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
제3조(회기) - 삭제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
제명 성주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제3조(회기)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정례회의 회기는 연 2회를 합하여 35일 이내로 한다.	제명 성주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(회기) - 삭제